

제8장 부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기타 전공 등의 이수

제34조(부전공) ①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 분야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학적부와 학위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② 부전공 신청, 자격, 이수, 학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복수·다중·융합·기타 전공) 복수 및 다중, 융합, 기타 전공의 인정을 위한 이수학점, 졸업성적,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35조의2(전공예약제 입학생의 전공이수) 전공예약제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 및 성적

제36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수시시험 및 기말시험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출석) 학생은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8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승인 받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제3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특수한 과목의 성적은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만 구분하여 P(급) 또는 F(낙)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 이상과 P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4.5	D+	1.5
A	4.0	D	1.0
B+	3.5	F	0
B	3.0	P	
C+	2.5		
C	2.0		

④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이수 할 수 있으나, 취득한 성적이 D+ 이하 과목만 재이수 할 수 있다.

⑤ 대학예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사경고) ① 일반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학생에게는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사경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수료 및 졸업

제41조(졸업) ①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4.5.27.>

1. 본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1.5 이상인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출석, 원격 포함)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이고 이중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23.4.18.>

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대학에서 해당전공학점으로 48학점(출석, 원격 포함)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23.4.18.>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본 대학에 제출한 자

라.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 학칙 사본 및 학위증 사본을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학위수여요건 해당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졸업여부 및 졸업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5.27.>

제42조(학위수여) 졸업자에게는 별표2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할 경우 본교 학위종류 및 전공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며, 유사성 판단은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 및 수료 기준학점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학년수료증서)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5조(졸업평가 및 졸업인증)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서 졸업평가를 졸업시험,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졸업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에서는 졸업인증제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공개강좌

제46조(공개강좌) ① 교양, 학술 또는 실무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특례입학

제47조(외국인학생 등)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외교포 및 외교관자녀, 본 대학의 총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등에게는 정원외로 입(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외국인 등 특례 입(편입)학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13장 등록금

제49조(등록금) 학생은 매학기초 등록 시에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입학(편·재입학 포함) 이 허가된 자는 제49조에 규정된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등록금 등의 감면)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하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금,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입학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2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학생활동

제53조(학생회) ① 본 대학의 설립정신에 따라 기독교정신의 토대위에서 학풍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치활동을 통해 지도자적 인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연마하기 위해 백석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둔다.

-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54조(회원 자격) 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휴학 및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5조(지도교수의 학생지도) ①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자치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금지활동) ① 학생은 학교내외를 막론하고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학생은 성차별 및 성희롱·폭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기회의 공정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학생 간 또는 학생, 교직원 간 대인관계 시,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이성을 열등한 성으로 보는 언행이나 성적대상으로 표현하는 행위

제58조(학생단체의 승인) 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활동의 사전승인)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 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 ② 전항 제1호의 집회에 관하여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간행물의 지도와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장 열린교육

제61조(열린교육) 본 대학은 학생 또는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열린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2조(위탁생) ① 정부 각 부처 또는 자치 단체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정원의외로 입학할 수 있다.
- ②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유 기관의 직을 떠났을 때에는 제적한다.
 - ③ 위탁생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 제62조의2(시간제등록생) ① 본 대학은 일반 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부(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간제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 한다.
 - ③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은 재학생과 통합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을 각각 구분하여 해당 연도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각각 선발한다.

- ④ 시간제등록생 선발은 사범학부 및 보건학부를 제외한 학부를 모집단위로 선발하며,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⑥ 시간제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⑦ 시간제등록생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⑧ 기타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수업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하며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을 포함함)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은 당해 계약기관 또는 본 대학 및 본 대학의 법인시설(천안, 서울)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및 학생 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장학금

제64조(장학금의 지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제66조(장학세칙)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규율, 포상 및 징계

제67조(규율) 본 대학의 학생은 기독교인으로서 단정한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임하여야 하고, 학교가 정하는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래 국가 및 인류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8조(포상)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특히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69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업이 열등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불량한 자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5. 기타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교무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장 조직 등

제70조(조직 및 직제) 본 대학의 조직 및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70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3(학교기업 설치·운영)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의4 삭제 <2022.2.21>

제70조의 5(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이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와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의6(협력연구소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7(자체평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8(사회봉사 및 장애학생지원) 본 대학은 사회봉사 및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9(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본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에 활용 가능하며,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5.27.>

제19장 교수회

제71조(구성) ① 본 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과 총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교직원도 참석시킬 수 있다.

제72조(소집)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3조(성립) 교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74조(심의)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20장 교무위원회

제75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의 교무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처·실장급 이상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필요할 경우 약간 명의 교·직원을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76조(기능)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장 대학평의위원회

제77조(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대표 5인
2. 직원 대표 5인
3. 조교 대표 1인
4. 학생 대표 2인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제78조(대학평의위원회 기능) 대학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부터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대학평의위원회 운영)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80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1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 부속기관으로 백석정신아카데미, 백석역사박물관, 도서관, 백석문화예술관, 정책본부, 대외협력본부, 인성개발본부, 교목본부, 인사관리실, 정책협력실, 법무지원실, 취업진로지원처, 글로벌인재육성처, 창업지원단, 대외협력처, 국제교류처, 지역혁신추진단, 교목실, 영성훈련원, 백석역사관, 기독교박물관, 현대시 100년관, 보리생명미술관, 기독교미술연구소, 백석생활관, 인성개발원, 백석휴먼인성 혁신사업단, 전산정보원, 평생교육원,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원(서울), 기독교대학실천원(천안), 백석연수원, 교수학습개발원, 원격교육지원센터, 커리큘럼인증센터, 학생역량 관리센터, 인권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국제교육센터, 군선교지원센터, 백석태권도선교단, 글쓰기클리닉센터, 대학 성과관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RISE센터, 글로컬사회공헌센터, 지역혁신센터, 백석XR 센터, 산학공유협업센터, 기업협업센터, 백석무인항공센터, 백석실버센터, 백석웰다잉 힐링센터, 아동가족상담클리닉,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백석아동발달지원센터, 보건실, 백석연구소, 신학은학문이아니다연구소, 유관순연구소, 기독교학문연구소, 링크플러스 사업단, 기독교학부실습관, 사범학부실습관,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본부, 백석대학 합창단을 두고, 부설기관으로 백석대학교회(천안·서울·청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27.>

② 제1항의 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장 교원

제82조(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83조(특별교원) 본 대학에는 특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장 학칙개정

제84조(학칙 개정절차) 이 학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1. 학칙 개정안 작성 및 공고: 기획처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개정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등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심의 및 공포·시행: 학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시행한다.

제8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7.15.>

부 칙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3조 1항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제3조 제1항은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학번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복학자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학했던 자의 복학에 있어 당초 소속되어 있는 재학 당시의 모집단위가 야간학부(과)에서 주간학부(과)로 전환되었거나 학부(과)의 폐지, 통합, 명칭, 계열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 ①항의 편제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③(재입학자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제적된 자가 재입학에 있어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야간학부(과)에서 주간학부(과)로 전환되었거나 통합, 명칭, 계열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Ⅱ/ 학 사

제3조제1항의 편제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70조의 3에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상학부 경영정보학전공자는 e-비즈니스학전공으로, 정보통신학부 정보처리학전공자, 사이버상거래학전공자는 각각 소프트웨어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으로, 정보통신학부의 컴퓨터애니메이션학전공자, 산업정보디자인학전공자, 인터넷정보디자인학전공자는 각각 디자인영상학부의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인터랙티브미디어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입학당시의 전공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독교학부 교회비서행정학전공자는 기독교비서학전공으로, 교회실용음악학전공자는 기독교실용음악학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입학당시의 전공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법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자는 경찰학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단, 입학당시의 전공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천안대학교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백석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실천목회연구소 설치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2009년 2월 기독교학부 기독교실용음악학전공 졸업자부터는 음악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독교학부 기독교실용음악학전공은 기독교실용음악전공으로, 기독교미술학부 기독교교회화학전공은 기독교교회화전공으로, 기독교인테리어디자인학전공은 기독교인테리어디자인전공으로, 기독교공예학전공은 기독교공예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별지서식 1의 학위증서는 2007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디자인영상학부 인터랙티브미디어전공자 중, 2009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전공 소속으로 한다.

②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기독교학부 선교학전공자 중 2012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기독교학부 언론선교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제1항의 별표 1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전공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전공)에 소속된 학생 중 2010년 3월 1일 이후 복학하는 학생과 2013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법정학부는 법정경찰학부로 변경한다.
 2. 기독교학부 기독교실용음악전공은 기독교문화예술학부 기독교실용음악전공으로 변경한다.
 3. 기독교미술학부 기독교회화전공, 기독교인테리어디자인전공, 기독교공예전공은 기독교문화예술학부 조형회화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전공으로 각각 변경한다.
 4. 음악학부 피아노전공은 기독교문화예술학부 피아노전공으로 변경한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컴퓨터음악전공의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과를 원하는 경우 여석이 있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제1항의 별표 1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정보통신학부 컴퓨터학전공자 중 2014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모바일컴퓨팅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Ⅱ/ 학 사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의 [별표 1]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2016년 2월 기독교학부 기독교교육학전공 졸업자부터는 신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제1항의 [별표 1]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기독교문화예술학부 공연예술전공은 해당전공의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과를 원하는 경우 여석이 있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제1항의 별표1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2조의 별표2는 2014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전공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재적생의 소속학부 또는 전공을 2014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기독교문화예술학부는 문화예술학부로 변경한다.
2. 디자인영상학부 시각정보디자인전공은 디자인영상학부 시각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한다.
3. 디자인영상학부 방송미디어영상전공은 문화예술학부 방송영상전공으로 변경한다.
4. 기독교문화예술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과 공예디자인전공은 디자인영상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과 공예디자인전공으로 각각 변경한다.

② 전공이 폐지된 경상학부 e-비즈니스학전공, 관광학부 관광통역전공, 기독교문화예술학부 조형회화전공은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부(과)를 원하는

경우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및 전공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학부 또는 전공의 명칭을 2017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법행정경찰학부는 경찰학부로 변경한다.
2. 기존 법행정경찰학부의 경찰학전공은 경찰행정학전공으로 변경하고, 법학 및 행정학 전공은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부(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허락한다.



Ⅱ/ 학 사

3. 문화예술학부의 연극영화전공은 연기예술전공으로, 성악·뮤지컬전공은 뮤지컬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전공의 명칭을 2018년 3월 1일부터 기독교학부의 선교학전공은 미디어선교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및 전공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학부 또는 전공의 명칭을 2019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정보통신학부를 ICT학부로 변경한다.
2. 경찰학부의 교정보호학전공은 교정보안학전공으로, ICT학부의 전자제어학은 인공지능 제어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 제1항의 별표 1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법령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첨단학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중 관련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부·전공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의 학부 또는 전공의 명칭을 2021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ICT학부를 컴퓨터공학부로 변경한다.
2. ICT학부 인공지능제어학전공은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전공으로 변경한다.
3. 삭제 <2022.2.21.>
4. 스포츠과학부 유소년스포츠전공은 생활스포츠전공으로 변경한다.

② 전공이 폐지된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과 ICT학부 정보통신학전공은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부(과)를 원하는 경우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 제1항의 별표 1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전공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의 학부

Ⅱ / 학 사

또는 전공의 명칭을 2022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경찰학부 범죄학전공은 경찰범죄수사학전공으로, 교정보안학전공은 범죄교정학전공으로 변경한다.
2. 스마트IT공학부는 첨단IT학부로 변경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 제1항의 별표 1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명칭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의 학부 또는 전공의 명칭을 2023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기독교학부 기독교상담학전공은 기독교학부 상담학전공으로 변경한다.
 2. 기독교학부 미디어선교학전공과 기독교교육학전공은 2023학년도부터 전공을 폐지한다.
 3.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산업전공 및 생활스포츠전공은 스포츠경영전공으로 변경한다.
- ② 전공이 폐지된 기독교학부의 미디어선교학전공과 기독교교육학전공은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부(과)를 원하는 경우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 제1항의 별표 1은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전공이 폐지된 문화예술학부의 피아노전공은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부(과)를 원하는 경우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전공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상학부 국제통상학 전공의 명칭을 2025년 3월 1일부터 경상학부 국제무역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제학부 한국문화태권도전공은 2025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